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1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28.

발 의 자 : 박용진 · 권칠승 · 이형석
박범계 · 김승원 · 박주민
이은주 · 오영환 · 전재수
김한규 · 양이원영 · 윤건영
이탄희 · 김영배 · 송기헌
소병철 · 김의겸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수활동비는 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, 수사, 안보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에 쓰이는 비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특수활동비 역시 국가 예산임에도 수사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. 특히 검찰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한 공개 결정이 났음에도 자료의 대부분을 가린채 공개하고 있으며, 국회의 집행내역 공개 요구에도 기밀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채 집행지침 요약본만을 제출하는데 그쳤음.

국가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지켜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. 이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,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44조의2 신설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2(특수활동비의 관리 등)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참고하여 특수활동비(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,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·안보,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행결과보고서에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재판이나 수사가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집행결과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4조의2(특수활동비의 관리 등)</u> <u>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참고하여 특수활동비(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,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·안보,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</u> <u>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</u>

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행결과보고서에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재판이나 수사가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집행결과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